

4주차

새로운 사회계층, 사족(士族)의 등장:1520년대

김 성 우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부를 쌓는 사람들

- 관료층
- 외방 유력층

02. 농장(農庄)의 발달

- 16세기 지주제의 발달
- 농장제의 발달 추이

03.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1): 전가사변형 면제권

-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
-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
- 1524~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

04. 사족의 특권(2): 정직(正職) 독점권

- 사족 지위 영속성의 기초: 관직
- 잡류층(雜類層)의 사회적 지위
- 16세기 사족층의 무반(武班) 인식

05. 사족의 특권(3): 향촌 운영권

- 조선 초기 유향소(留鄉所)의 설치와 폐지 추이
- 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
- 1525년(중종 20) 사족의 국가공인 이후
- 향약(鄉約) 실험
- 서치(序齒) 논쟁
- 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

3차시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1): 전가사변형 면제권

학습목표

-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 사족층의 재규정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1524~1525년 전가사변 정책을 살펴본다.

학습내용

-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
-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
- 1524~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

국역체제 붕괴, 농장제 성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 외방의 토호, 원악향리(元惡鄉吏)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함
- 관료, 서울에 거주하는 유력층의 행위는 불법으로 여기지 않음

중앙정부의 대응

- 외방의 무단토호에 대해 전가사변형(全家徙邊刑) 적용
- 대표적인 무단 행위
 - 공·사천 용은(容隱), 무단향곡, 호강(豪強) 품관 등

전가사변 정책의 유형

범죄자 사변

- 사족층 포함
- 모든 계층에 적용

강제사변

- 사족층, 특수 국역 종사자(갑사, 내금위 등), 보호 대상자들은 제외

사족층의 면제 논리 (1)

“ 예는 서인에게 미치지 않고,
형벌은 대부에게 미치지 않는다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 ”

《예기(禮記)》

사족층의 면제 논리 (2)

“대소원인은 10악, 도적질, 살인, 수뢰 이외에는
태와 장(笞杖)을 치고, 속형(贖刑)을 허용한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추단(推斷)」

강력한 전가사변형 실시 주장

- 시기: 중종 대 중반 이후
- 배경: 국역체제 전면 해체를 막기 위함
- 내용: 외방 유력층의 부정 축재에 대한 처벌 예고

전가사변형 대상자 논쟁 배경

- 평안도 군사 징발을 통한 여진 정벌 실패
- 평안도 기근 심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 하삼도 유력층을 평안도로 이주하기 위해
전가사변형 정책 실시

전가사변형 대상 범죄

- 무단 토호의 3대 불법:

공사천 용은, 무단 향곡, 호강 품관

- 부세 납부의 불법:

공물 남징(濫徵), 공물 방납(防納), 전세 불납

- 지방 행정의 불법:

공문서 위조, 공물(公物)사취, 잦은 송사, 부민고소 등

전가사변형 대상 범죄 결과

- 무단 토호, 원악향리로 분류된 자 뿐만 아니라
사족들도 다수 포함됨

사족 대상 여부 논쟁

- 1509년(중종 4) ‘전가사변’ 정책 실시
- 원칙
 - "입거(入居)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할 뿐이어서 조금이라도 사족과 관련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지 않는다."

1524년 진사 손난직 사건

손난직이 군적
작성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름



‘전가사변’
대상자로 확정됨



진주 유생 60명이
그가 진사라는 이유로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소를 올림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

사족의 성격 전환

- 조선 초기: 특정 관직 역임자와 그 후손을 의미함
- 경국대전: ‘대소원인’과 같은 의미
-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사족의 범주 설정 필요
 - 계기: 1524년(중종 19)에 실시된 ‘전가사변’ 정책

사족층의 재규정화: 1차

- 고위 관료: 경국대전에 명시된 ‘대소원인’ 규정으로 제한
- 중종: 당시 사회 통념이 허락하는 지배층 일반으로 확대

→ 결론:

사족은 “문무(文武) 출신자의 자제 및
내외 모두 현관(顯官) 역임자가 있는 자”

사족층의 재규정화: 2차

- “내외 모두 현관 역임자가 있는자”의 범주 논란
- 고위 관료: ‘내외’를 친변, 외변 ‘모두’ 현관을 배출한 가문이라고 주장
- 중종: ‘친변 혹은 외변 가운데 한 가문’이라는 주장
 - 결론: 중종의 견해가 받아들여짐

현관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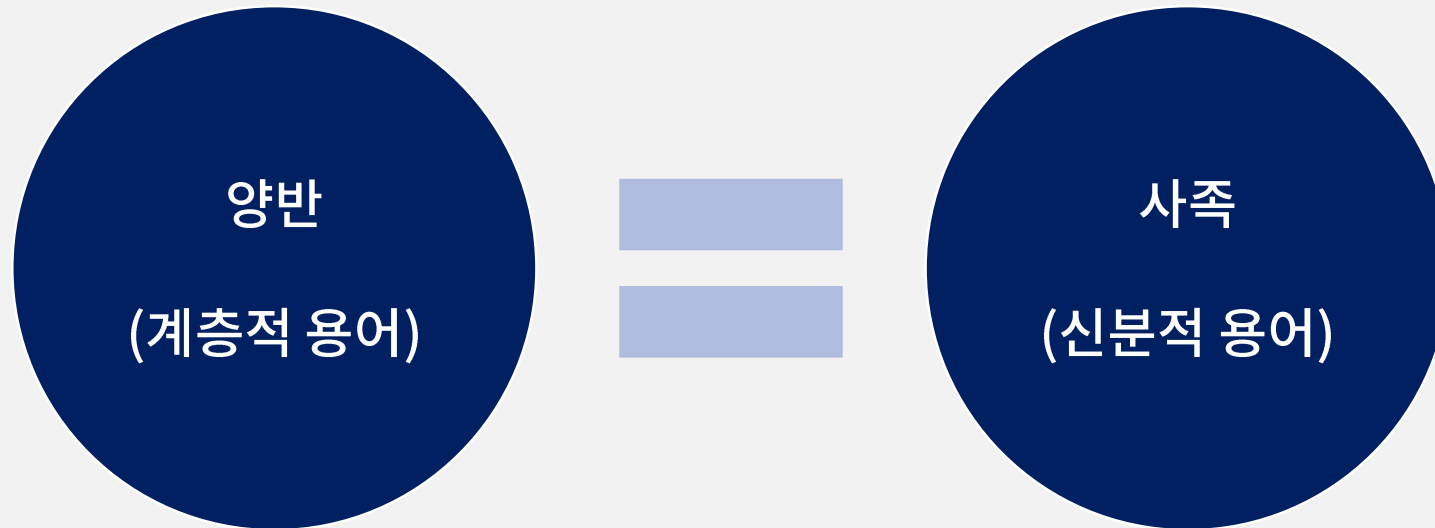
- “동·서반 정직 5품 이상 및 감찰·6조 낭관·부장·선전관
·현감·감찰·부장·현감·동·서반 6품 정직 (正職)이었음”
- **결론: 6품[參上職] 이상의 관료를 배출한 가문과 그 후손**



이항복
이성공신상 후모본

사족의 최대 범주

- “친변이나 외변 가운데 한쪽이라도 4조 내에
과거 혹은 음서로 문·무반 정직 6품 이상에
진출한 관료를 배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진사,
그리고 그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가문”
- 당시 통용된 ‘양반’의 범주를 넘어 지배층 일반으로 확대됨



지배층
양반 = 사족

피지배층
비(非)양반, 상인(常人)

법전의 사족 규정

“ 문·무과 출신의 자손 및 양변 4조 모두
현관 책임자가 있는 자 및 생원·진사 ”

각사수교(各司受敎), 「형조수교(刑曹受敎)」 명종 5년(1550) 2월 27일

1524~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

1524~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

- 사회 통념상 ‘양반’으로 확장된 사족층
 - 전가사변 대상 제외
- 전가사변 정책: 지배층을 사족으로 인정
 - 범죄에 대해 사족층에게 체형 면제권 부여

마무리

- 국가 체제 붕괴 상황에서 지방 토대를 주범으로 전가사변형에 처하려 한 정부
- 사족의 범위 확정과 체형 면제권 부여
 - 지배 신분으로 자리잡음

다음 차시에서는

- 사족의 특권(2): 정직(正職) 독점권

SOURCES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36548946>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